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13-0059

2013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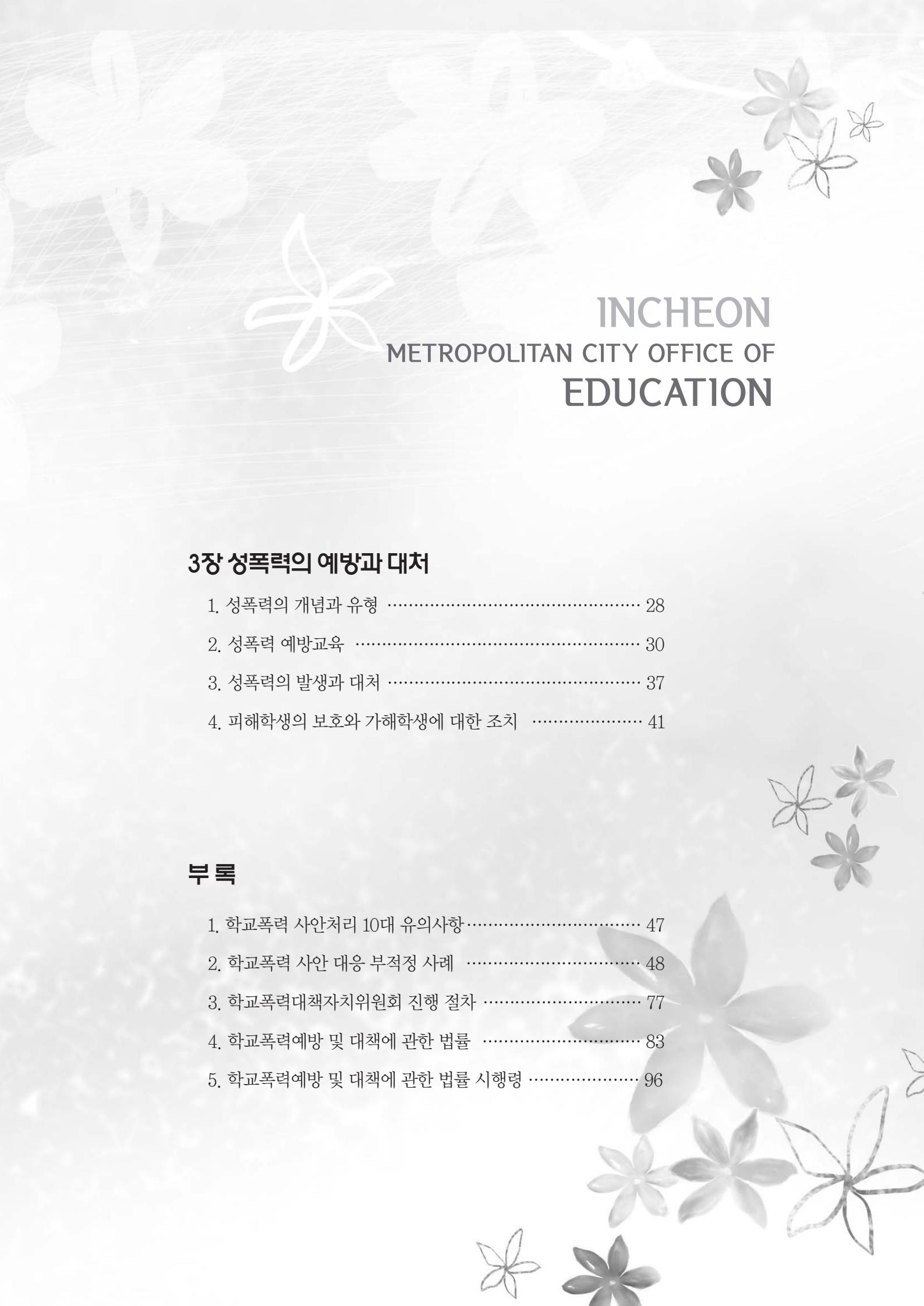
Contents

1장 학교폭력 이해하기

1. 학교폭력의 개념	07
2. 학교폭력의 유형	08
3. 학교폭력의 원인	09
4. 학교급별 학교폭력의 특징	10
5.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	11

2장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심의

1.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2. 자치위원회 소집	18
3. 자치위원회 개최 시 준비사항	19
4. 자치위원회 진행	19
5. 피해학생 보호조치	21
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3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3장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28
2. 성폭력 예방교육	30
3. 성폭력의 발생과 대처	37
4.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41

부록

1. 학교폭력 사안처리 10대 유의사항	47
2. 학교폭력 사안 대응 부적정 사례	48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7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83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1

학교폭력 이해하기

◆ 필요성

교사의 학교폭력 이해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1) 학교 폭력의 개념
- 2) 학교 폭력의 유형

◆ 활용 방법

- 1) 교사 자신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정도를 점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학폭법」 제2조

유의 사항

▶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학폭법」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 「학폭법」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학생이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학생이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학생이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 예방법 관련	예시상황
신체 폭력	•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웃,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속칭 뺑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빙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쿨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의 원인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부족
 - ※ 한국 학생의 언어적·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 협력 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¹⁾
-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 신체활동 참여 기회 부족
 - ※ 과도한 스트레스 →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 소통·감성 능력 약화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 제도 미흡
- 교사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 ※ 개인생활지도(3.74) < 사회생활지도(3.81) < 수업실행(3.88) < 평가 및 활용 (3.89) < 수업준비(3.94)²⁾

**보호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

- 자녀와의 대화·학교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형제가 없는 한 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애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약화

**인터넷·게임·
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경향
 -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 53.7%³⁾
- 인터넷, 게임 산업을 경제적·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 미흡

1) 2010 청소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여성가족부, 2010)

2)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 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1)

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정부관계부처합동, 2012년 2월)



4 학교급별 학교폭력의 특징

초등학교

-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과 관련된 폭력이 많아 체계적 성교육 필요 : 바지를 벗기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의 사례 많음
- 담임교사 없을 때, 학교폭력 발생 : 특활시간, 급식, 방과후 등 담임교사 부재시 학교폭력 발생
-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왕따대물림 등 새로운 폭력의 유형 등장
- 선후배관계를 이용한 폭력 및 금품갈취 심각

중학교

- 성폭력 사건(성희롱, 성추행)이 자주 발생
- 욕설 등 언어폭력으로 시작해 신체폭력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음
- 뺑 셔틀, 금품 상납 요구 등 금품갈취 사례 많음
-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외모로 인한 집단 따돌림이 심각
- 폭력 서클을 통한 금품상납 등 금품갈취 및 신체폭행이 이루어짐
- 사이버 폭력이 심각

고등학교

- 선후배 간 군기 잡기 · 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행사
- 집단따돌림 및 성폭력(성희롱)사례 많음
-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폭력서클 존재
- 남학생은 금품갈취와 폭행 등 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고, 여학생은 따돌림, 욕설과 같은 은근한 폭력 사례가 많음
-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내 금품갈취, 괴롭힘, 심부름과 같은 사례가 드러남



5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오해1. 우리班에는 학교폭력이 없고,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사의 40.6%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33.7%만이 ‘학교 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에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⁴⁾. 이것은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다름을 나타낸다. 교사나 어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장난, 괴롭힘 등이 당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거나 가해를 하고도 행동수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차후에 큰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예방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사소한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오해2.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인 학생들 간의 싸움은 양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는 피해·가해학생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학생은 폭력을 당한 후에 외부의 상처는 물론 심리·정서적인 큰 충격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보호자가 개입하여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학교폭력을 중단할 수 있다.

오해3. 학생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어른이 되면 없어진다.

흔히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그대로 두면 폭력성향이 심화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오해4.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폭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잘 산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성인이 되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학교폭력 경험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피해경험은 평생 피해의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사회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성인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학교폭력 이해와 실태의 진단(한국교육개발원, 2005)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심의

◆ 필요성

자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 자치위원회의 진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절차와 종류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소집 시 준비사항, 소집 방법, 역할 등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1)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자치위원회의 소집
- 3) 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과 개최시 준비사항
- 4) 자치위원회 진행
- 5) 피해학생 보호조치
- 6)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 활용 방법

- 1)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활용한다.
- 2) 자치위원회의 소집주체, 요건 및 방식을 숙지하여 자치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활용한다.
- 3) 자치위원회 진행 절차를 숙지하여 실제에 적용하고 개최시 준비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4)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5)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선도·교육조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치위원회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법률 제12조제2항)

◆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보호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14조제1항).

- 해당 학교의 교감
-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학부모 대표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보호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보호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보호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
 -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위촉
- 판사 · 검사 ·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및 지역변호사회 연계
 - 졸업자 중 법률전문가 초빙
-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해당 지역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ONE-STOP지원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ONE-STOP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등의 청소년 전문 인력 등을 연계



◆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

- 외부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
 - 자치위원회나 분쟁조정 시, 법률 ·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면 진행 과정상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 외부전문가가 관계하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
 - 판사 · 검사 · 변호사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 : 지역변호사회,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에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사회봉사를 원하는 변호사와 연계하도록 노력한다.
 - 의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유도를 위한 전략 : 학기 초 의사 자격이 있는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자치위원회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심 있는 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 경찰공무원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 : 해당지역 및 학교의 담당경찰관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수락의 용이성,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14조 제6항).

◆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위원장

-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
- 회의 주재
- 간사 1인 지명

위원

- 회의 안건 심의
- 분쟁조정 참여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자치위원회 사무 처리

▶ 자치위원회의 간사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시행령 제14조 제5항).

◆ 자치위원회 운영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자치위원회 역할

• 피해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확인 기회부여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해학생 선도 · 교육 조치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재심청구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 · 교육조치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선도 · 교육조치 중 전학과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률 제17조 2항).

•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시행령 제26조)

- 자치위원회 위원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 교육조치 및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구가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학교장의 역할

-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6항).
-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7조의 2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

2 자치위원회 소집

◆ 자치위원회의 소집주체, 요건, 방식, 회의록 작성

• 소집의 주체 : 자치위원회 위원장

-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 소집의 요건

- 자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률 제13조 제2항)

• 소집의 방식

- 원칙 : 위원장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 예외 :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집을 통보할 수 있다.

▶ 통보 방식

위원장이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통보할 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양식 18〉

• 회의록 작성

-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3항). 〈양식 23〉



▶ 회의록 공개

-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 3항).
-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다(시행령 제33조).

3 자치위원회 개최 시 준비사항

◆ 서류준비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예: 사안 조사서, 관련 학생 확인서, 증거자료 등)

▶ 서류 전달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될 사안보고에 관련된 자료들을 자치위원회 시작 전에 위원과 위원장에 전달하도록 한다. 이는 위원과 위원장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공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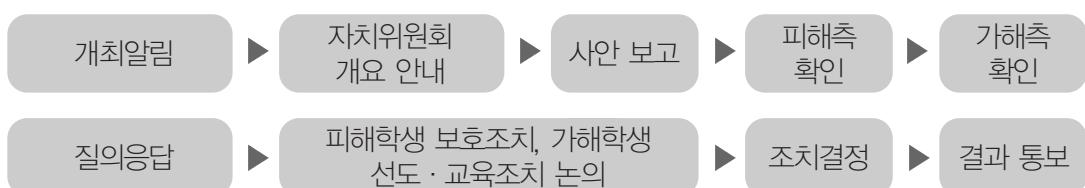
- 피해·가해측 대기 장소 준비 :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책임교사가 사전에 가해측과 피해측이 있을 장소를 따로 지정한다.
- 회의 좌석 배치 준비 : 자치위원회 진행시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회의 좌석 배치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비

- 자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 회계 예산안 편성 시 현실성 있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해야 한다.

4 자치위원회 진행

◆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예시

• 개최알림 : 위원장

위원장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알린다.

• 자치위원회 개요안내 : 책임교사

① 자치위원회 목적

② 진행절차

③ 주의사항 전달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린다.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④ 참석자 소개

⑤ 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이 녹취됨을 공지한다.

• 사안 보고 : 책임교사

– 사안 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 피해측과 가해측의 확인 시 대면의 문제

피해 · 가해측이 확인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피해측은 확인 후 퇴실하고, 대기하고 있던 가해 측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진행해야 피해 · 가해측이 마찰 없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 피해측 확인 (사안확인, 요구사항) 및 질의응답

–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측의 입장에서 욕구를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서 답변한다.

• 가해측 확인 (사안확인, 가해측 입장) 및 질의응답

– 사안을 확인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한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 교육 조치 논의 및 결정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 교육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 피해 · 가해측에 결과 통보 : 서면으로 결과 통보한다. <양식 24>

▶ 서면으로 결과통보 시 주의점

• 피해측 :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가해측 :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 ·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5 피해학생 보호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제5호 : 삭제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자치위원회 개최하기 전 긴급한 경우의 조치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 제1항).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률 제16조 제2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다.

- 제2호 :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2장 _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심의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다.

• 제5호 : 삭제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방법으로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추가보호조치

- 출석일수 산입 : 학생의 결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법률 제16조 제4항).
-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학생의 보호(법률 제16조 제2항)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가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 학교에서의 봉사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등을 하도록 하게 한다.
- 학교에서의 봉사는 출석정지하고는 의미가 다른 조치이므로 되도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지도교사를 생활지도부장 외에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2장 _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심의

• 제4호 :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위한 조치이다.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이다.

• 제6호 :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7호 :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 제8호 :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전학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9호 :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학 처분 시 학교의 장의 조치사항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



◆ 자치위원회 처분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협박 또는 보복행위와 조치 가중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긴급한 경우 선도조치의 거부나 회피시의 조치

학교의 장이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7항).

• 조치거부 회피시의 조치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 제11항).

▶ 조치거부 및 회피 시 조치 내용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시행령 제19조)

–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기준(시행령 제21조)

–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확인,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치위원회 결과 생활기록부 기재방법

– '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데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

입력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폭법」 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2장 _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심의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3항).
-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 통고제도(소년법 제4조 제3항)

- 개념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법령 저촉 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자 · 학교장 · 사회복지시설장이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 소년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 장점 : 수사를 받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자 · 학교 · 법원이 공동대응,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전문조사관 조사 및 전문가진단 · 심리상담 조사 등 전문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안) 〉〉

▶ (졸업 직후 삭제 대상) 경미한 조치 사항인 1, 2, 3, 7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유형 구분〉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
기본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서면사과) • 3호 (학교내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호 (출석정지) • 8호 (전학) • 9호 (퇴학)
부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7호 (학급교체) 		

※ 조치별 유형 구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 반영하여 고시 예정

- ▶ (삭제 시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 학년도 2월
- ▶ (삭제 방식)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하며,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함
- ▶ (적용 시기) 2013년 2월 초 · 중 · 고 졸업생부터 적용
- ▶ (보완 사항) 현재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기말 · 학년말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

※ 경미한 조치를 삭제하는 처리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3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필요성

학생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 주요 내용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의 발생과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로 구성되어 있다.

◆ 활용 방법

- 1) 성폭력 예방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예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2)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실제 사건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다.
- 3) 사건 발생 후 학교 차원에서의 처리와 법적 처리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의 의미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란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 (물리적인 힘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 법률상의 성폭력 개념(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률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 1)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2)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3) 아동 · 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4) 아동 · 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5)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8)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9)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10)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의 그 미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 성폭력 행위의 구분

접촉행위	비접촉행위
<p>* 만지는 행위 ex) 청소년의 생식기 등 몸을 만짐 청소년의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 구강성교 및 성교 등</p>	<p>* 만지지 않는 행위 ex) 청소년에게 성적인 말을 건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여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함</p>

성에 대한 표현이나 감정 또는 가치판단 같은 한 개인 스스로를 표현하고 규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행동에 관한 선택 및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원치 않는 성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결정권을 성적 자결권이라고 하는데⁵⁾,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적 자결권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청소년 개인의 성적 자결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서울특별시 교육청, 「함께 건너는 징검다리- 교사를 위한 성폭력 상담 지원 매뉴얼」, 도서출판 사람과 지혜, 2008, 3-4쪽.



◆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들을 정리하면, 강간, 강간치상 및 강간치사, 간음, 추행, 학대, 음란물 촬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행위별로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및 피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 하면 또래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지인에 의한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구분에 의한 성폭력 유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⁶⁾

• 또래 성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경우의 성폭력을 의미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끼리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까운 사이이거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교제 중인 학생들 간의 데이트 성폭력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를 들치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본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 및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까지가 모두 또래 성폭력의 유형에 해당되는 모습들이다.

• 사이버 성폭력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글자 및 부호), 이미지(음향 및 영상물)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불쾌감, 수치심, 두려움)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사이버 성희롱,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사이버 음란물 제시로 분류할 수 있다.

•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성폭력 유형으로 이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평범하게 생겼거나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상을 가진 가해학생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는 발생 장소가 가해학생의 자택, 자주 다니는 길, 학교 근방, 놀이터 등 일상적으로 자주 오고가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지인에 의한 성폭력

이 유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학생 측이 부모님의 지인이라 자주 집에 드나들었다던가, 이웃이라거나 친구의 가족인 경우 피해학생은 이들을 익숙하게 생각 해서 방심할 수 있다. 가해학생도 ‘아는 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학생들을 협박하거나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등 지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친족에 의한 성폭력

현행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는데⁷⁾,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에 의해 성추행 및 강간 등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친족에 의한 성폭력

6)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서」, 2012, 33–59면 요약.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제5항.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약 30% 가량이 바로 친족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성폭력 유형이다. 또한 가해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며, 가해학생은 의부나 친부, 남자형제 등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가족들 내에서는 성폭력 사실을 숨길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재차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피해 여중생, 남자 경찰에게 조사 받던 중,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치욕적인 말을 들음.
- 2008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의 8세 어린이 성폭행 사건
→ 피해 어린이, 장기와 생식기 등에 걸쳐 대수술을 받은 후 배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생활.
-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김수철의 8세 어린이 성폭행 사건
→ 피해 어린이, 항문 및 생식기에 심한 상처, 대수술 및 정신적 트라우마 상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이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왔고, 그 결과 현재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인식이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도록 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 중 하나이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도 중요한 의무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의 준비

• 성폭력 예방시수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책은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영유아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시수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지침인 「초·중·고 학생 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학년별 성폭력 예방교육 시수를 10시간 이상씩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학폭법 제15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13년부터는 초·중등학교의 성교육 시간을 현행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성

보통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교육 중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 및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성교육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성지식, 양성평등교육,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 등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게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보된 시수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교육할 수 있는데, 아래의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를 위한 각종 매뉴얼 등의 지도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_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연령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

연령	주요 내용
5~8세	집 밖에서의 안전에 대해 가르치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며 나쁜 느낌을 받았을 때 바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8~12세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장소(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 외 위험한 지역)에 대해 알려주며 그 외의 장소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 바른 성의식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13~18세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력, 데이트에서 주의할 점, 성병, 임신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사간의 역할 분담

평상시,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련 교과(담임)교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성교육 전문 연수과정 이수교사를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로 우선 선정하되,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교과교사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학교장은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또는 관련 교과교사를 전문연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시]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련 교과교사 간의 역할 분담 방안

- 성교육 담당교사 : 성상담, 교직원·학생 대상 교육, 관련 교과교사의 수업 지원,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 관련 교과(담임) 교사 : 성교육 내용 재구성 및 학생교육 실시

② 가급적이면 연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전문가 초빙 자체 연수를 실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성교육 마인드를 제고한다.

③ 성교육 수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교재

• 법무부 「나를 사랑하는 법」

- 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보호자 및 교사
- 구성 : 전 3권 세트(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보호자 및 교사용)
- 발행 : 2012년 3월 법무부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 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용 「우리 공주' 의 나를 사랑하는 법」



법사랑 왕국의 ‘우리공주’ 가 해돌이, 해순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전순진’ 학생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면서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등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의로 검사」의 나를 사랑하는 법」

실제 발생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의 상황들을 모아 상황별 대처방법을 ‘정의로 검사’ 가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보호자 및 교사용 강력범죄 대처 매뉴얼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

학교에서 교사들이 본 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집에서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을 수록하여 피해 발생시 아동 대상 조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림.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발간한 「나를 사랑하는 법」전 3권 세트



• 보건복지부 「교사용 성교육 매뉴얼」

- 대상 :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구성 : 보육교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중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전 4권
- 발행 : 2010년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 내용

▶ 보육교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

영 역	주 제
인간발달	나의 몸(나의 몸에 대한 이해 / 소중한 나의 몸) 발달적 변화(발달의 과정 이해 / 발달의 의미 이해)
성과 안전	성폭력(기분 · 느낌의 인식과 표현 / 위험한 사람의 이해, 유괴 예방과 대처, 성폭력 예방과 대처) / 성 관련 행동(언어적 성행동 / 신체적 성행동), 음란물(음란물 인식 / 음란물 대처)



3장_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영 역	주 제
관계와 성역할	성 인식(성의 이해 / 성 정체감), 성역할과 양성평등 존중(다양성 존중 / 권리와 의무) 또래 관계 · 가족 관계(우정과 사랑 / 긍정적인 또래관계 / 긍정적인 가족관계)
생명존중	난자와 정자(난자와 정자 / 수정), 임신(임신 / 임신 기간과 자궁 / 태아의 성장발달) 생명탄생(출산 / 생명탄생의 기쁨), 소중한 생명(신생아 이해 / 생명에 대한 책임)

▶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영 역	주 제
성은 인생이야	성을 둘러싼 다양한 인식 / 성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생각
우리 인생의 이벤트는 사춘기	사춘기 경험 주체로서 학생 스스로의 느낌 전달 및 사춘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사춘기 변화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
우리의 몸은 다양해서 아름다워	우리 몸의 다양한 이미지 공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인식 시킴
음란물에는 잘못된 지식이 담겨 있어요	음란물 분석 및 비판 능력 함양/ 음란물 접촉 후 겪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한 대응
성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성 상품화에 대한 사고 능력 함양/ 구체적인 예를 통한 성 상품화의 문제점 전달
우리 반은 여자와 남자가 친하게 지내요	남녀 학생들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연습/ 커플 간의 대화에 적용
일일 기자가 되어 부모님을 인터뷰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가 된다는 것/ 타인의 부모님 인터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알아요	포괄적 성과 관련한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킴

▶ 중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영 역	주 제
우리는 모두 성적 존재이다.	성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 경험, 상상을 드러내도록 돋는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임을 알게 한다.
바른 언어로 성을 이야기 하면 더 행복해진다.	학생들의 언어로 표현된 성적 표현에 대한 반성 / 대안적 성 표현 언어를 모색한다.
짧은 광고 한 편도 주체적으로 읽어낸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적 재현물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 중인 왜곡된 젠더 관계를 학생들과 함께 인식하고 토론한다.



영 역	주 제
'야동'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현대 육체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야동'을 조명한다. '야동'과 현실이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돋는다.
세련된 남자는 충동을 관리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남학생들이 자신의 성충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충동 관리법을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스스로 설계하도록 격려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친' 방법도 불사한다.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주어 자신을 지키는 데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성폭력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연습한다.
우리는 행복한 이성교제의 디자이너	'선언이 실천을 부른다.'는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행복한 이성교제를 위한 일관되고 포괄된 행동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공표하도록 격려한다.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싶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기가 탄생할 가장 좋은 개인적·사회적 환경을 상상해 보도록 격려한다. 더불어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준비 없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상상해 보자고 제안한다.

▶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영 역	주 제
섹스가 아니라 섹슈얼리티이다.	성교육의 중심은 Sexuality이다 필요한 개념은 간명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남자의 자격'은 그의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남학생의 섹슈얼리티에서 남성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과 함께 '남자의 자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행복한 만남의 비결은 상호존중이다.	학생들이 이성 친구에게 상호존중을 약속하는 영상편지를 제작함으로써, (이성 간) 상호존중의 원칙을 단편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실현할 가치로서 자발적으로 익히도록 돋는다.
나는 이성 친구에게 피임 Policy를 제안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피임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이성 친구에게 둘만의 '피임 Policy'를 세우자고 제안하는 상황극을 만들어봄으로써 피임을 보다 실천 가능한 것으로 재인식하도록 한다.
나는 부정적 또래압력을 이긴다.	집단(성)폭력의 기해학생집단 형성의 메커니즘을 알고, 기해학생 예방에 초점 맞춘 활동을 진행한다.
나는 저급한 사업광고에 휘둘리지 않는다.	외모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과 상황을 점검하고 '외모주의'에 도전한다.
음란물, 나의 미래를 좀먹는다.	음란물에 대한 솔직한 토론의 기회를 열어주되, 자기 인생의 경영자로서 음란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돋는다.
성을 사고파는 것은 범죄이다.	성을 사고파는 것은 범죄임을 알린다. 성매매로 이어지는 '행동 사슬'을 끊는 연습을 한다.
나는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실천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알고 표현한다. 실제적인 성 권리장전을 만들어본다.



3장_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서」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교사
 - 구성 :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전 2권
 - 발행 : 2012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 내용 ▶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성폭력의 개념과 사례로 본 대처방법, 알아야 할 사후 대응방법 등을 소개함.
▶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
성폭력의 개념과 안전진단 평가, 사례를 통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및 알아두어야 할 사후 대응 방법이 수록되어 있음. 구성은 학생용과 유사하나 지도안과 팁이 삽입되어 있어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서」



- 경기도 교육청 성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자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성폭력 예방」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교육청
 - 구성 : 성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자료 중학생용, 성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자료 고등학생용 전2개 콘텐츠
 - 발행 : 2012년 4월 경기도 교육청
 - 내용 ▶ 중학생용 및 고등학생용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성폭력 예방」
나진심 선생님이 등장하여, 성폭력 인지 점검 OX퀴즈, 성폭력의 정의와 사례, 성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성폭력 예방법과 사후 대처법, 성폭력 관련법률 및 상담기관 소개 등의 내용을 교육함. 특히, 그림과 동영상 등을 이용, 시각적인 자극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콘텐츠임.





3 성폭력의 발생과 대처

◆ 성폭력의 발생 징후

- 성범죄에 노출된 어린이의 이상 징후

주로 10세 이하의 어린이(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조숙한 성지식을 나타내는 말들을 무심코 내뱉는다.

예) '아저씨 고추에서 우유가 나왔다.' 라는 말을 함

- 명백하게 성적 묘사를 한 그림들을 그린다.

예) 구강 성교하는 그림을 그리는 아동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를 표현한다.

예) 자신보다 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행위 및 또래와의 성행위, 나이든 사람에게 성적인 몸짓을 보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를 표현한다.

예)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이를 구강성교에 활용함

- 성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앓거나 걸어 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 •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임신 징후가 나타남 • 질이 긁혀 있거나 상처가 나 있음 • 처녀막이 손상됨 • 정액이 남아 있음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등이 관찰됨 • 항문 내장이 짧아지고 뒤집힘 • 항문이 좁아지거나 괈약근이 손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장애나 퇴행행동을 보임 • 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함 (자살시도 등) • 충동성, 산만함, 주의집중 장애 • 혼자 있기 싫어함 • 특정한 사람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방화를 저지르거나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함 • 섭식장애가 있거나 비행, 가출, 범죄행위에 가담함 • 우울증을 앓거나 사회와 단절됨

◆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성폭력 피해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3장_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사의 신고의무

학교장이나 교사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4조(과태료) ③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신고하기 전에 피해학생에게 충분히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켜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학생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게 되면 해당 학생이 가출하거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알려야 한다. 만약, 피해학생이 이를 극구 반대한다면 학생을 설득하여야 하며, 또 다른 피해(피해학생의 자살 등)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학생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 성폭력 피해학생 응급조치

- 응급조치 순서

① 성폭력 사건의 발생 직후에는 피해학생의 신체에 남은 흔적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성폭력 여부를 진단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학생을 데리고 간다.

병원에 가게 되면,

→ 정액 채취(사건 발생 48시간 이내)

→ 성병검사

→ 임신여부 검사

→ B형 간염 검사

→ 파상풍 예방접종

→ 질 파열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학생이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사건 발생 즉시 씻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도록 한다.

② 몸에 외상이 남아 있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하여 저장해 둔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가급적 얼굴과 같이 찍도록 하며, 피해 직후에는 외상이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이나 긁히거나 뜯긴 상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견 되는 데로 촬영해두도록 한다.



③ 병원 진단이나 몸에 남은 상흔 외의 다른 증거물, 이를테면 가해학생이 흘리고 간 물건 등은 반드시 보존하도록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거물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수집할 증거물 예시

- 피해 당시 피해학생이 입었던 옷(겉옷, 속옷 포함)
-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던 물건(흉기, 명함, 라이터, 사진 등)
- 가해자의 모발, 체모 등

이러한 증거물들은 비닐 재질의 봉투가 아닌 종이봉투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증거들은 피해학생이 당장 가해학생을 고소할 마음이 없어도 후에 고소를 결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피해학생에게도 주지시켜야 한다.

④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린다.

⑤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신속히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관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긴급상담 및 긴급보호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117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ONE-STOP 지원센터	1899-3075 (11월 통합)	24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응급의료지원 및 여성경찰관이 상주하여 수사지원, 무료 법률자문 제공
해바라기 아동센터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

• 피해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 상담 시작 전 반드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약속한다.
- 상담 장소는 피해학생이 가장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장소로 한다.
- 피해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3장 _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피해학생이 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 피해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피해학생이 말로 하기 어려워 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학생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 피해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 여성긴급전화 및 긴급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개입과정이나 주의사항, 긴급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 상담 시 주의하여야 할 2차적 피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학생은 사건해결 과정 중 심리적 충격을 재차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담, 의료, 수사 과정 중에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이고 왜곡된 성 의식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학력이나 옷차림, 가정환경, 평소 행동 등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접근하게 되면 피해학생에게는 오히려 성폭력 자체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상담할 때에도 이러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너도 동의하지 않았니?”

“그러게 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니?”

“너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다.”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 학생에 대한 조치

- 우선,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성폭력은 일종의 폭력이고 특히 매우 조심스러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학생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 시켜야 한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비밀누설 금지)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 · 청소년 및 대상아동 · 청소년의 주소 · 성명 · 연령 · 학교 또는 직업 · 응모 등 그 아동 ·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4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이거나 같은 학교인 경우, 가해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서 피해 학생이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 학생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예시	처 리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양 학교가 공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안을 처리

-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협의

교사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학을 강요하는 등의 일방적인 조치는 학폭법 제16조 제1항 5호의 ‘전학권고’가 삭제됨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단, 학폭법 제16조의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들, 즉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모두 성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사나 학교장은 피해 사실의 경중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전문기관과의 연계, 의료시설 안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학교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성폭력은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가 여부가 피해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처리

피해 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2012년 1월 27일 일부개정)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⁸⁾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조치 등)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8)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 2. 결석 부분 참조.



3장 _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피해학생의 등교 거부 시 조치

성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등교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만약 이 때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심리적 압박감과 동시에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폭법에 의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학폭법 제16조 제4항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중략…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일시 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 등으로 피해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학폭법 제16조 제5항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성폭력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다. 사안의 경증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이 조치들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고,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제외한 다른 조치들을 가해학생에게 부과한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 된다.

•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강화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부과하여 이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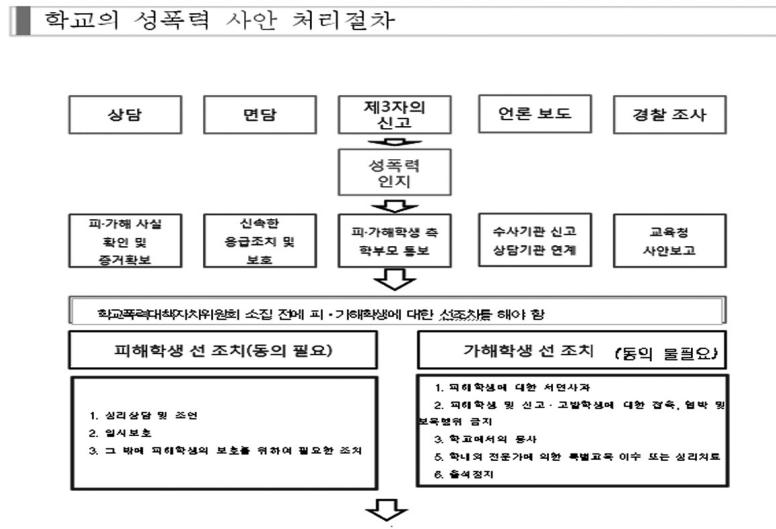
▶ 특별교육이수 기간 동안 출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가해 학생이 만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보호자가 동반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유의사항

사건의 조기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후에 조치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올바른 조치이다. 퇴학처분(자퇴 포함) 학생에게는 재발방지교육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이를 통해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고등학생은 초·중등교육법상 퇴학처분이 가능하나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는 불가함



참고사항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시에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	
※ 성폭력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 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의·의결해야하며, 학생정계 조정위원회 정계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같을 수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4

부 록





1. 학교폭력 사안처리 10大 유의사항

- ◆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아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한 민원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 주요민원 사항을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2.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가·피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등의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피해자측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5.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
6.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
7.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8.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9.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10.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

일러
두기

2. 학교폭력 사안 대응 부적정 사례

본 사례집은 단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 현장 컨설팅 및 국민신문고 민원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전담기구의 구성·운영 및 자치위원회의 의사 결정과정 중에서 일부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단 및 전문조사단 운영 시동 사례들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발생시 각급 학교에서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책임교사 등에 대한 연수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동 사례들을 참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학교규칙이 있는 경우 개정 등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학교 모욕·폭행 등 사안

■ 사안개요 및 경과

- 피해학생 1학년 B는 '12.3월 중순 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교실 등에서 가해학생 1학년 A등 6명의 친구들로부터 감금, 폭행, 모욕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함
- 피해학생은 컨설팅 당시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결석 중
- 언론 다수 보도

- 발생 기간 : '12. 1학기 중 4개월
- 발생 장소 : 교실 및 급식소 등
- 가해학생 : 1학년 A등 6명
- 피해학생 : 1학년 B
- 학교폭력 유형 : 폭행, 감금, 모욕, 강제추행 등
- 경 과
 - '12.7.00 : 학교폭력 발생사실 학교 신고(폭행, 모욕, 감금 등)
 - '12.7.00 : ○○지방경찰청 117신고센터 신고 · 접수
 - '12.7.00 :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결정 유보)
 - ※ 경찰 수사결과 확인 후 결정하고자 유보
 - '12.8.00 :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 제8호 및 제5호 4명, 제4호 및 제5호 1명, 제2호 및 제5호 1명
 - '12.8.00 :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기각)
 - ※ 재심 청구내용 : 전학조치를 받지 않은 2명에 대한 추가 전학조치요구
 - '12.8.00 : 가해학생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기각)
 - ※ 재심 청구내용 : 전학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12.8.00 :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
 - ※ 가해학생 4명에 대하여 감금, 모욕, 폭행 등의 사실 인정



■ 대응사례 분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가·피해학생에게 통보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원장 사인을 찍은 결정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
-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경찰관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 자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유보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12.7.00. 8명의 자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가해학생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명백한 학교 폭력 사안에 해당되고 가해학생들도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경찰의 사실 확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경찰의 수사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로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기 위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를 미루거나 연기할 수 없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8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방법 부적정

- 동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2.7.00(1차)과 '12.8. 00.(2차)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한 후, 의결 결과를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1차 심의결과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명의(학교장 직인)로 통보하고, 2차 심의결과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 명의(사인)로 통보하는 등 학교장 명의(직인) 문서로 통보하지 않음

【관련법령 등】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는 14일 이내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 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31)



학교폭력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학교장이 해당조치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치권자는 학교장이며 조치결과 통보서 역시 학교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있는 날은 처분 상대방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되므로 이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운영 부적정

- 동 사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스쿨폴리스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유보 의견 및 가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 자치위원회에서는 스쿨폴리스가 제시한 의견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양정을 심의 결정하는 등 자치위원이 아닌 자가 자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여 결정

【관련법령 등】

자치위원회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 등을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가는 자치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는 자치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22)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 가해학생의 진술서는 가해학생에게 민·형사상 불리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사생활의 보호 측면에서도 보호될 필요가 있어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피해학생 측에게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피해학생 학부모가 요구하자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4명의 진술서를 열람·복사하여 제공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학교 성추행 사안

...

■ 사안개요 및 경과

- 피해학생 1학년 B는 '11.7.00~7.00까지 ○○수련원에서 1박 2일간의 간부수련회에서 1일차 저녁식사 후부터 자정사이 ○○○호실에 합숙한 1학년 16명 중 일부가 휴대폰으로 음란영상을 시청 중 행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
- 가해학생 1학년 A등은 '음란물 시청 및 모방'은 인정하나,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추행 사실은 부인

○ 발생 일시 : '11.7.00 저녁식사 후

○ 발생 장소 : ○○수련원 숙소

○ 가해학생 : 1학년 ○반 A등 7명

○ 피해학생 : 1학년 ○반 B

○ 학교폭력 유형 : 성폭력, 사이버폭력, 모욕 등

○ 경 과

- '11.8.00 : 수련회에서 발생한 퇴폐행위(음란 동영상 시청 · 모방)를 생활지도부에서 인지한 후 조사 시작
- '11.8.날짜미상 :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소집 요구
- '11.9.00 : 제3차 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가해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음란물 시청 모방'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함
- '11.9.00 : 피해학생 B ○○중학교 전출
- '11.9.00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심의 의결내용 : 가해학생 A 교내봉사 1주일('11.9.○○~9.○○)
- '11.10.00 : 피해학생 학부모, ○○경찰서에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직무유기로 고소
- '11.11.00 : 학교장 등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대응사례 분석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아 사안조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 동 사안을 목격한 학생 전원에 대한 진술서를 받지 않고, 일부 학생에 대한 진술서만 징구
- 특정학생 등에 대하여는 반성과 사과가 충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주장을 반영하여 특정학생 1명만을 자치위원회 회부

- 학교폭력 전담기구 미구성 및 사안조사 부적정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구성 ·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아 사안조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미흡
-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가 · 피해학생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목격한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11.7.00 발생한 음란 동영상 시청 및 모방 사안에 대하여 학생지도부에서 ○○호에 합숙한 16명에 대하여 진술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학생(7명)에 대하여만 진술서를 징구하는 등 사안조사를 부적정하게 처리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이하 지침, '12.3.16) p6에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및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담임교사와 전담기구에서의 사안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가 · 피해학생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목격한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진술서 등) 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지도부 사안 담당교사는 '11.9.00 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1.8월말(날짜미상)에 “자녀가 학교에 가려하지 않으니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들이 전학 등의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각서를 ‘학생부를 대표해서’ 작성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제공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퇴폐행위(음란동영상 시청 및 모방)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서 B와 A등 7명에 대하여 진술서를 징구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학생 학부모가 A를 제외한 6명은 반성과 사과가 충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가해 지목학생 가운데 6명을 제외한 특정학생 A만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성 결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 결정 결과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조치는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가 ·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재심 절차 미안내

**【관련법령 등】**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는 14일 이내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 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20, 31)

• 학교장 의무이행 소홀

-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전담기구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학교폭력 발생사안을 교육청에 미보고
※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 A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11년 학생선도규정 운영 부적정

- 학교 학생선도규정('08.11.00. 시행)에 학교폭력 사항이 징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학교폭력법이 아닌 학교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법 개정 내용이 학칙과 상충되는 경우, 단위학교의 학칙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단, 학칙 개정 이전에라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법에 따라야 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10)



3. ♀♀고등학교 성폭력 사안

■ 사안개요 및 경과

- 피해학생 2학년 여학생 D는 '11.2학기부터 같은 반 A등 3명의 남학생들로부터 교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함
- 이후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무단결석하며 방황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으로 간주
- 피해학생 D는 다른 학교 전학

○ 발생 일시 : '11. 2학기 이후~

○ 발생 장소 : 교실 등

○ 가해 학생 : 2학년 A, B, C

○ 피해 학생 : 2학년 D

○ 학교폭력 유형 : 성폭력 등

○ 경 과

- '12.4.00 ~ : 피해학생 학업 및 진로문제로 학생 상담 실시
- '12.8.00 ~ : 2학기 개학 이후 무단결석
- '12.9.00 ~ :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중 상담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사실 확인
- '12.9.00 : 해바라기센터 성희롱 상담 · 접수
- '12.9.00 :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 상담교사 상담
- '12.10.00 :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희망, 피해학생 전학 희망
- '12.10.0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수사기관 조사 등을 이유로 결정 보류
- '12.11.00 : 피해학생 ○○여고 전학



■ 대응사례 분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피해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실관계 여부 확인
-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피해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이유로 결정 보류

- 전담기구 미구성 및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

- '12.11.15 현재까지 전담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사안발생 즉시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5.00 접수한 금품갈취 사안과 '12.9.00 접수한 상습 언어폭력 사안에 대하여 전문계고교 출신의 취업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대신 고의적으로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한 가·피해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정 보류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경찰의 수사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로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기 위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를 미루거나 연기할 수 없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88)

- 성폭력 사안발생 미신고 및 학교폭력 대응 부적정

- 학교장 또는 교사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가해학생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충분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자치위원회에 보고
 -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최우선 하여야 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이름을 명시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실여부 확인



- ※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학생이 더욱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결과 초래
- ※ 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평소의 품행을 사유로 하여, 성추행 사안을 인정하지 않고 학업회피의 수단으로 인식

【관련법령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54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부적정

- 학교규칙에 교감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구성 총 인원수를 14명으로 구성
- 또한,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학부모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토록 학교규칙에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과 달리 운영
※ 당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10명 중 3명(30%)였으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4명 추가하여 7명(50%)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를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자치위원회 개회 정족수 위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령과 달리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사항에 대하여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절차 미준수
※ 개최 안내(자치위원 : 4일전, 가·피해학생측 학부모 : 1일전) 유선 통보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재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31)





4. □□중학교 따돌림 사안

■ 사안개요 및 경과

- '12.4.날짜미상 피해학생 2학년 E는 급식시간에 가해학생들이 던진 조개껍데기와 국물에 머리와 옷에 맞음
- '12.5.00 현장체험학습 시 숙소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후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외모에 대하여 놀리고 목을 조르고 따돌리는 등의 학교폭력 가해
- 피해학생 E는 자퇴 후 심리상담 등 치료 중

○ 발생 일시 : '12.4.날짜미상 급식시간 및 '12.5.00

○ 발생 장소 : 급식실 및 현장체험학습장

○ 가해 학생 : 2학년 A, B, C, D

○ 피해 학생 : 2학년 E

○ 학교폭력 유형 : 모욕, 따돌림 등

○ 경 과

- '12. 4.00 : 급식실 조개껍데기 투척으로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 '12. 4.00 : 전담기구 조사 결과 가해사실 발견 못함(전담기구 종결)
- '12. 5.00 : 현장체험 학습 중 말다툼 및 따돌림 발생(피해학생 주장)
- '12. 8.00 : 왕따 피해를 주장하며 등교 거부
- '12. 9.00 : 피해학생 보호자 학교폭력 신고
- '12. 9.00 :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결정 유보)
- '12. 9.00 : E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집단 설문조사
- '12. 9.00 :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결정 유보)
- '12.10.00 : 제3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 : 심리상담, 일시보호, 보호기간 출석 인정, 가해 지목학생 : A, B, C 혐의없음

- '12.10.00 : 피해학생 장기결석에 따른 등교요청서 발송
- '12.11.00 : 피해학생 학부모 ○○○도청 재심 청구(기각)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사회봉사 요구



■ 대응사례 분석

- 정서적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가해 지목학생에 대한 조사 미흡
-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자치위원장 명의로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시 불복수단 미기재
-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 추가 개최

- 전담기구 사안조사 미흡

- 가해 주동학생으로 지목된 A학생이 자살고위험군에 속하여 정서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사안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도 진술이 피해학생 진술과 상반되어 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2.4. 신고된 동 사안에 대하여 5개월이 지난 '12.9.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자연 처리 및 이로 인한 민원 야기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이하 지침, '12.3.16) p6에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및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담임 교사와 전담기구에서의 사안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가·피해학생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목격한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진술서 등) 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미흡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개최 1~3일전 통보하여 피해 학생 측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1차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피해학생 측에 게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음
 -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가·피해학생 측에 통보하면서 학교장 명의가 아닌 자치위원장 명의로 통보 하였으며, 1차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보 시 불복수단 기재하지 않는 등 재심절차 미안내

【관련법령 등】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31)

학교폭력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학교장이 해당조치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치권자는 학교장이며 조치결과 통보서 역시 학교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있는 날은 처분 상대방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되므로 이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1, 2차 자치위원회 개최 시 가·피해학생간 상반된 진술에 따른 추가조치의 필요성 등을 사유로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유보하자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를 추가 개최
-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피해학생 학부모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제3차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학부모 불참을 사유로 참석 시까지 회의를 지연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 야기

【관련법령 등】

재심청구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차적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재심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경찰 조사결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치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23)





5. ■■고등학교 폭행 사안

...

■ 사안개요 및 경과

- 가해학생 3학년 A는 자신이 피해학생 3학년 B에게 C에 대하여 비방하는 뒷담을 했는데 그 말을 B가 C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에 격분하여 B의 안경 낀 안면을 수차례 폭행하여 안와골절(전치 14주) 중상의 폭력 행사

○ 발생 일시 : '12.6.00 15:05분경

○ 발생 장소 : 4층 음악실 앞 복도

○ 가해 학생 : 3학년 A

○ 피해 학생 : 3학년 B

○ 학교폭력 유형 : 신체폭력

○ 경 과

- '12.6.00 : 사안조사 실시(가·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
- '12.6.00 : 피해학생 안와골절 수술(○○병원)
- '12.6.00 : 제1차 자치위원회 개최
※ 가·피해자 학부모 불출석을 사유로 결정 연기
- '12.7.00 : 제2차 자치위원회 개최
※ 모의고사·기말고사 임박을 사유로 결정 연기
- '12.7.00 : 제3차 자치위원회 개최
※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40시간, 특별교육 4시간 조치 결정
- '12.7.00 :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에 대한 가벼운 조치 항의, 117 신고
- '12.9.00 :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정
※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조치 결정
- '12.9.00 : ○○지검, 가해학생 기소유예 결정
※ 협의는 인정되나 초범, 우발적 상황 감안
- '12.10.00 : 피해학생 학부모, 민사소송 청구
※ '12.10.00, 교감·학생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
- '12.10.00 :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
- '13.02.00 :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감사 실시



■ 대응사례 분석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아 학교폭력사안 발생 즉시 상담 등 보호조치 지연
- 폭행에 의한 중상해(전치 14주) 사안이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 격리를 요청함에도 학교장 긴급 조치(출석정지) 미실시
- 자치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간 주장에 다툼이 없음에도 타당한 절차없이 자치위원회 결정 2차례 연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등 행정절차 지연

• 전담기구 조사 등 초기 대응 적정성

-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상담 등 보호조치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연하고, 중대사안 및 자치위원회 개최 사안은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사안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에 교육청에 지연 보고
 - 폭행에 의한 중상해(전치 14주)가 발생하고,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격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우발적이고 재발 위험이 없다는 사유로 학교장 긴급조치로서의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 ※ 피해학생은 추후 2차적 언어폭력(협박) 발생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학교폭력법 제1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17)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동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피해학생 간 주장에 다툼이 없음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자치위원회 결정을 2차례 연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연
- 자치위원회 개최 안내 시 가해학생에게는 시간을 두고 서면통보, 피해학생에게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날 유선 통보하여 피해자 보호자의 진술권을 제한하고,



- 재심절차에 대하여 미안내로 피해자 권리구제 기회 침해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보 및 재심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음

【관련법령 등】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사안처리 Q&A, p31)

- 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을 두차례 유보하고, 교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의 장이자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임에도 자치위원회 소집통보, 조치결정, 결과처리 지연 등 행정적 책임 일탈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등 후속 행정절차 고의 지연
 -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인용('12.9.00, 출석정지)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학생부 기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대입 수시전형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사안조사('12.10.00)시까지 지연하고 출석정지 미이행, 학생부 미기재 등 행정 절차 고의 지연



6. 끄끅중학교 폭행 사안

■ 사안개요 및 경과

- '12.4.00. 09:30경 피해학생 E는 A등 4명의 가해학생들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등을 당하여 그로 인한 괴롭힘과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
-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신고했으나, 학교측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없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축소·은폐 의혹 제기

○ 발생 일시 : '12.4.00. 09:30경

○ 발생 장소 : ○○아파트 자택 투신(*사망)

○ 가해 학생 : 2학년 A, B, C, D

○ 피해 학생 : 2학년 E

○ 학교폭력 유형 : 성폭력, 신체폭력 등

○ 경 과

- '12.4.00 : 자살 사안 발생
- '12.4.00 : 사안 발생 당일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 ※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 조사 곤란
- '12.4.0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 전학권고 2명, 사회봉사·특별교육 1명 조치 결정
- '12.4.00 : 경찰 수사 결과, 폭행혐의로 가해학생 검찰·법원 송치
 - ※ 1명 ○○지방검찰청, 2명 ○○가정법원 소년부, 1명 선도조건부 불입건
- '12.5.00~5.00(3일) : ○○교육청 감사 실시
 - ※ 신분상 처분 :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경고 4명, 주의 2명
- '13.1.00 :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상대 행정소송 취하
 - ※ 화의 조정 종료 : 피해학생 명예졸업장 수여, 공식적 사과 등



■ 대응사례 분석

-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가해학생 및 학부모만 참석한 가운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측 진술권 제한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시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학권고’ 조치
- 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할 때 재심청구 등 불복수단 미안내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절차·운영 부적정

- 자살한 피해학생 보호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1·2차 자치위원회(12.4.00) 개최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가해학생 및 학부모만 참석한 가운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보호자의 진술권 제한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시 ‘학교폭력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의거 ‘전학’ 결정을 하여야 하나, 법적 근거없이 ‘전학권고’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학을 회피하여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재심청구 등 불복수단을 안내하지 않음

【관련법령 등】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는 14일 이내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7. ●●고등학교 모욕 사안

■ 사안개요 및 경과

- 피해학생 2학년 C는 가해학생 2학년 A와 B를 '11.5월(당시 1학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교생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11.10.부터 '12.3월 중순까지 교실 등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모욕 등으로 인하여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음
- 피해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3일 이내 종결한 것은 학교 폭력 축소 · 은폐의혹 제기
- 피해학생 C는 자퇴 이후 검정고시 준비와 심리상담 치료 중

○ 발생 기간 : '11.10월 ~ '12.3.00

○ 발생 장소 : 교실 및 급식소 등

○ 가해 학생 : 2학년 A, B

○ 피해 학생 : 2학년 C

○ 학교폭력 유형 : 모욕, 폭행

○ 경 과

- '12.3.00 :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사실 학교 신고
- '12.3.00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후 종결
- '12.3.00 : 피해학생 자퇴신청 및 처리
- '12.4.00 :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청 3가지 질의 등 이의신청
- '12.4.00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
- '12.4.0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교육청 권고)
 - ※ “학교폭력 아님” 결정
- '12.5.00 : ○○경찰서 학교폭력 수사결과 통보
 - ※ 가해학생 A와 B에 대하여 모욕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12.12.00 : ○○지원 가정법원 화해권고 결정



■ 대응사례 분석

- 담임교사는 사안인지 3일 이내에 해결이 되어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종결
- 자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동 사안과 관련하여 개최한 자치 위원회에 4명이 참석하여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
- 피해학생의 진술서(학교폭력 신고서)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복사하여 제공

• 학교폭력 사안조사 부적정

- 피해학생 C는 가해학생 A와 B의 언행(모욕 등)으로 심한 불쾌감과 소외감 및 수치심 등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그 가해대상으로 A와 B를 지목하였는데도 B에 대하여는 가해 진술서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학생 A에 대해서만 진술서 징구하여 공정성 결여
 - 동 사안이 신고된 지 3일째 되는 '12.3.00. 피해학생은 담임 교사의 지속되는 강요에 의하여 가해학생 A를 “용서하겠다”는 구두 진술을 하였고, 담임교사는 사안 인지 3일 이내에 해결이 되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종결하여 축소 은폐 의혹 및 지속적인 민원 초래
- ※ 담임결과 보고서 및 피해학생 본인확인서는 6일 후인 '12.3.00 작성
- ※ '12.3.00. 피해학생은 자퇴하는 날에도 “가해학생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
- ※ '13.1.30. 현재까지 피해학생 학부모는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법적대응 검토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11.11.20시행)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이하 지침, ‘12.3.16) p6에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및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담임교사와 전담기구에서의 사안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가·피해학생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목격한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진술서 등) 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9명(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6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한 후, 동 사안과 관련하여 '12.4.00. 개최한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자치위원은 4명으로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음에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이 아님”으로 결정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자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의 핵심정보인 가·피해학생의 사실확인서(진술서 등)는 가·피해학생에게 민·형사상 불리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사생활의 보호 측면에서도 보호될 필요가 있어 가·피해학생 진술서 등을 가·피해학생 측에게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담임교사 D는 '12.3.00. 동 시안과 관련하여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가해학생 A의 부모 등에게 피해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 피해신고서를 당사자간의 화해와 조정을 이유로 2부를 복사하여 배부
- ※ 이후 가해학생 A는 11개 항목으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거나 부인 또는 왜곡된 내용이라 는 반론문을 작성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고등학교 따돌림 사안

■ 사안개요 및 경과

- '12학년도 3월부터 피해학생 2학년 B는 같은 반 A부터 따돌림을 받아 교실에서 커터 칼로 자해 시도를 하였으나,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 미개최, 가·피해자 합의 시도, 가해자 전학 약속 파기 등을 통하여 은폐·축소하려함
※ A와 B는 ○○여중 동창생으로 ○○고 1학년때부터 2년간 동급생임. 트위터에 피해학생 학부모가 '○○고 학교폭력 은폐의혹' 리트윗 요청글 탑재
- 피해학생 B는 자퇴 이후 검정고시 준비

○ 발생 기간 : '12.3월 ~ '12.9월

○ 발생 장소 : 교실 등

○ 가해학생 : 2학년 A

○ 피해학생 : 2학년 B

○ 학교폭력 유형 : 따돌림

○ 경 과

- '12. 9.00 : 교실에서 커터 칼로 자해 시도, 학교 측 가정방문
- '12. 9.00 :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장 면담
- '12. 9.00 : ○○교육청 민원 접수(담임교체, 가해학생 퇴학 요구)
- '12. 9.00 : ○○교육청, 전교생대상 설문조사
- '12. 9.00 : 전담기구 회의개최(학교폭력 아님)
- '12.9월말 : 피해학생 학부모 ○○경찰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
※ 개인 애증문제로 판단 접수불가 통보
- '12.10.00 : 국민권익위원회 학교방문 조사
- '12.10.00 : 자치위원회 개최(학교폭력 아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결과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피해자 측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
- '12.10.00 : 교과부 주관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실시
- '12.10.00~11.00 : ○○교육청 감사
※ 신분상 처분 : 담임 등 5명(경고 4, 주의 1)



■ 대응사례 분석

- 학교폭력 사안 인지 · 신고 시 지체없이 담임 및 전담기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담임 교사가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축소 의혹 제기
-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해학생과 관련된 진술서 등의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 피해학생 학부모 교실 난입하여 폭언하는 등 학습권 및 안전 침해

-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 대응 지연

- 학교폭력 사안 인지 · 신고 시 담임교사 및 전담기구에서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담임교사가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 · 축소 의혹 및 지속적인 민원 초래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 학교폭력 예방 · 대책 관련 업무 수행자는 가 · 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나, 교감은 피해주장 학생 학부모가 가해지목 학생 A에 대한 진술서를 강하게 요청하자 가해 지목학생 A의 진술서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복사 제공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생 안전대책 수립 · 시행 부적정

- 학교의 장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 수립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운영하여야 하나, B학부모(‘12.9.00) 등이 교실에 난입하여 가해지목 학생들에게 폭언, 협박을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침해하였음에도 사전에 차단조치 하지 못함.
-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학생안전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학생 생활지도 계획에 CC-TV와 배움터 지킴이 현황 및 운영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의 학생 안전대책 수립 미흡



[관련법령 등]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사안

...

■ 사안개요 및 경과

- '12.5.00 ○○초등학교 6학년 ○반 학급 아이들이 A를 2012. 3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실에서 '잘 울고 선생님께 잘 이른다'고 하여 비난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한 A학생이 책임교사에게 전화로 1차 신고
 - ※ 담임 및 6학년부장의 학급자체 해결 권유로 신고 취소(5.30)
- '12.6.00. 피해학생 학부모가 왕따 사안으로 2차 신고

○ 발생 일시 : '12.3.학기 초 ~ '12.6.중순까지

○ 발생 장소 : 교실 등

○ 가해 자목학생 : 6학년 ○반 학생 전체

○ 피해 학생 : 6학년 A

○ 학교폭력 유형 : 따돌림(왕따)

○ 경 과

- '12.5.00 : 피해학생 A 학교폭력 1차 신고(5.00 신고 취소)
- '12.6.00 :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2차 신고
- '12.6.00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 ※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기각한다'라고 결정
- '12.7.00 : 전교어머니회 임시총회 개최(200여명 참석)
- '12.7.00 : 책임교사 B 교장, 교감 2명, 어머니회장 등 4명 고소 고발 예정 내용증명서 발송
- '12.7.00 : 피해학생 학부모 행정심판 청구(기각)
- '12.7.00~00 : ○○교육청 사안감사 실시
 - ※ 신분상 처분 : 교감 등 4명(경고 1, 주의 3)



■ 대응사례 분석

- 피해학생 A가 학교폭력 사안을 유선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 폭력신고대장 미기록
- 같은 반 전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진술서 작성에 있어 책임교사의 일부 강요에 의하여 작성
- 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교부하면서 자치위원 실명을 삭제하지 않은 채 공개

• 학교폭력 사안조사(신고 등) 부적정

- 피해학생이 학급 아이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다고 전담기구에 최초 신고를 하였으나, 담임교사와 6학년 부장교사의 일부 강요에 의하여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이 유선으로 신고한 학교폭력 신고내용 미기록
- ※ 이후, '12.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사안으로 재신고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p17, '12.3.15)

• 학교폭력 사안조사 부적정

- 동 사안에 대한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교사가 같은 반 C 학생 등 6명에게 피해학생 A가 당한 내용만 쓰라고 하는 등 진술서 작성에 있어 일부 강요
- 전담기구에서 6학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하여 일부 학생들은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학부모들은 불안감과 식욕저하, 설사와 두통 등을 호소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야기

•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적정

- 피해학생 학부모가 정보공개 청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회의록 사본을 교부하였고, 교부한 회의록 사본은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자치위원회 위원 실명 등을 삭제하지 않은 채 공개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중학교 신체폭력 사안

...

■ 사안개요 및 경과

- 피해학생 2학년 B는 '11.3월 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가해학생 2학년 A등 11명의 친구들로부터 신체폭력, 금품갈취, 셔틀 등의 지속적인 고통과 절도를 강요당하는 등 장기간 학교 폭력에 시달림

- 발생 기간 : '11.3월 ~ '11.12월
- 발생 장소 : 교실 및 복도
- 가해학생 : 2학년 A등 11명
- 피해학생 : 2학년 B
- 학교폭력 유형 : 신체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 경 과
 - '12.6.00 :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발생신고 및 접수
※ 우울증, 자살등 위험한 상태 진단(○○병원 정신과)
 - '12.6.00 : 피해학생 학부모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12.7.00~7.00 : 가해지목학생 사안조사 및 상담
 - '12.7.00 :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보류)
 - '12.7.00 :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전학 1명, 출석정지 5명, 학교봉사 1명 등의 조치결정
 - '12.7.00 :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사실 보고
 - '12.7.00 : 가·피해학생 학부모 서면통보



■ 대응사례 분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총 위원 10명 중 3명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 학교폭력 사안을 임의기구인 학교폭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등을 처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가 아닌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자치위원 10명 중 3명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 동 사안에 대하여 인지한 후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에서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 기구인 학교폭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
-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법령 등】

학폭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자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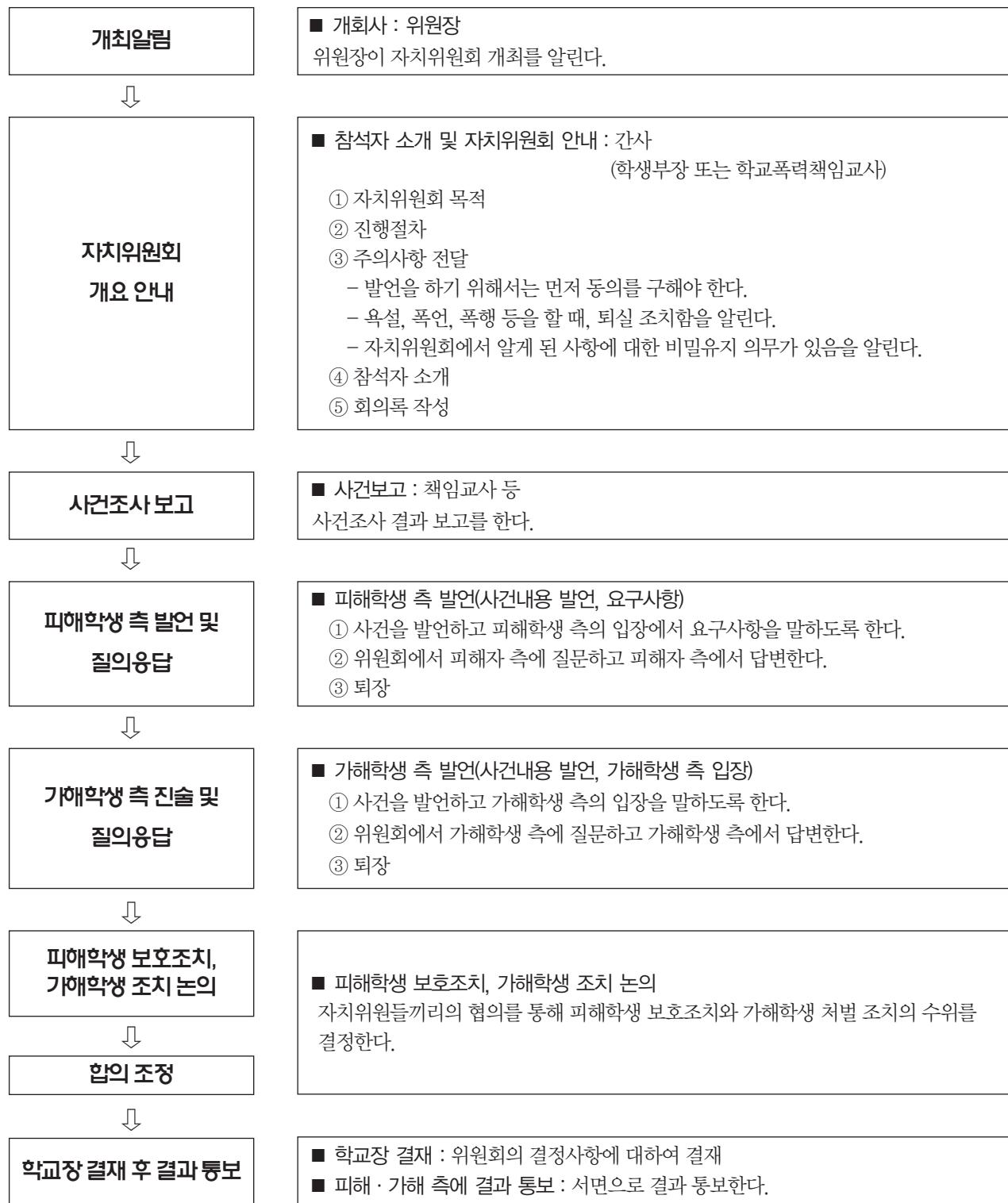
학교폭력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학부모 등과 면담시 배려 부족

- 피해학생 학부모와 누나가 학교방문 시 학교장은 동 사안에 대한 처리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자유로운 면담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측에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공개된 교무실에서 피해자 측과 면담을 하는 등 피해자 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민원 야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연

- 사건내용: 별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계	학생부장	교감	교장			
일 시	2013. 4. 17(화) 12:10 ~ 13:00	장소	Wee Class					
안 건	교내폭력 사건 가·피해자 처리 방안							
참석자	교감 학생부장 김○○(형사) 1학년 학부모 위원장 2학년 학부모 위원장 이○○(간사)							

학생부장 : 3학년 학부모회장은 현직 공무원으로 공무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과 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4.10(화) 1~1반 중식시간 매점에서 일어났던 김○○ 학생의 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치와 가해자 선도 조치 방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교감 선생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교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로 모이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 모두 현명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을 학생부장께서 해주십시오.

학생부장 :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2.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린다.
3.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원장(교감) :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교감) :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부장께서는 사안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학생부장 : 본 사안은 2013. 3. 28(목) 12:30분에 오○○와 정○○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경위서를 숙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5분간 숙독 후)

위원장(교감) : 사안내용은 충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먼저 이 사건을 신고한 이○○ 선생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경위서에 쓰여진 내용이 사실이고 허위인 것은 없는지요?

교사(이○○) : 예, 모두 맞습니다.

학생부장 : 예. 그럼 피해자 측인 국○○ 아버지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 아버지에게 사안설명 후) 사안내용이 맞습니까?

국○○ 아버지 :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화가 나고 그랬지만 앞으로 진급이 되면 같은 반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앞으로 제2의 다른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진○○ 학생에게 선처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교감) :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아버지 : 예 없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퇴실)

학생부장 : 다음은 가해자 학생인 진○○ 학생의 아버지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진○○ 아버지에게 사안설명 후) 사안내용이 맞습니까?

진○○ 학생 아버지 : 예 맞습니다. 우선 피해자인 국○○ 학생과 부모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의 아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저는 저의 아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일에 대하여 어떤 별칙도 감수할 것입니다. 다만 한 번의 잘못으로 저의 아들이 향후 학교생활이나 그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교감) :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2학년 학부모(김○○) : 진○○ 학생의 반성문에는 평소에 화가 나면 못 참는다고 쓰여 있는데 진○○ 아버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은 평소에 화가 나면 잘 참지를 못하는데 평소에 그런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진○○ 학생 아버지 : 특별하게 행동하거나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부장 : 진○○ 학생의 중학교 생활에서 폭력에 가담하여 징계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진○○ 아버지 : 아니요 없었습니다.

1학년 학부모(강○○) : 사건 당시 국○○이 학생의 피해 상태와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 아버지 : 당시 외상은 없었고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이 붓고 목이 빠근한 정도였습니다. 병원치료를 하였고 현재는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교감) : 피해자 국○○ 학생의 병원치료비와 부러진 안경에 대하여서는 진○○ 학생의 아버지가 모두 보상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신지요?

(위원 모두 : 없습니다)



위원장(교감) :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가해자 진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아버지 : 예 없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퇴실)

(진○○ 부모님 퇴장 후)

위원장(교감) : 그러면 학부모님은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고 이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 교육 조치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국○○ 학생의 두 부모는 사안 발생 즉시 4월 10일 19:00~20:30분에 피해자 국○○아버지와 20:50~21:30분에는 가해자 진○○ 학생의 아버지와 시차를 두고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국○○ 학생의 아버님께서는 국○○이 당한 상황에 대해 곤혹스러워하시면서 많이 놀라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었고 나름 가해자인 진○○ 학생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서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진○○ 학생의 부모는 한 시간 반 가량의 금년도 학교폭력대처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시책,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을 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 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그동안 학교에서 취해온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방송과 언론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정부의 대책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면서도 이번 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진○○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생활부 기록만큼은 안 되게 하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과부의 방침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해드리고 그 이후의 행동양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첨가해서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면 되니 진○○ 학생의 폭력성 재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도하여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해자 부모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함과 미 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자 성실히 조치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 학생의 심리 상담과 조언은 1차적으로 담임교사와 제가 실시하고 필요하면 인성상담부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두 학생의 관계는 소원하나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두 학생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으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가해행위로 인한 치료는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우관계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수집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1년간의 교우관계를 지켜보고 2학년 진급 시 계열정치 희망을 보아 간은 계열과 선택과목이 같아 동일 학급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될 경우는 분반조치는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의 협조를 얻어 추수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 조치로는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입니다. 현재 1항과 3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1학년 학부모(강○○) : 피해자인 국○○ 학생의 조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장 : 예 국○○ 학생이 가해자인 진○○ 학생에게 갖는 악감정은 있으나 국○○ 학생도 진○○ 학생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담임교사와 협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모두 피해자 조치에 대해 의의 없음에 동의 함.)

위원장 교감 : 학생부장님께서는 두 학생의 관계를 담임교사와 협조하여 면밀히 관찰하시고 피해학생의 보호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학생부장 : 예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관찰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3항 가해자 처리 규정을 보면,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의 9가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05시간 이내의 특별교육 이수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0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고 특별교육의 조치는 4~5일의 교육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2학년학부모(김○○) : 특별교육은 반드시 병과 해야 하는지요?

학생부장 : 예 병과해서 부과해야만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로 되어있습니다. **년 학부모 위원장 :**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징계결정 사항이 기록된다고 하던데 진○○ 학생의 경우도 기록이 되나요?

학생부장 : 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8호(전학), 9호(퇴학) 조치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 2) 4호 (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는 출결상황 및 특기사항란에
- 3) 1호 (서면사과), 2호(피해자 신고자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행하여 학생 생활지도 기록·관리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생활지도에 필요한 교육적 환경 및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상담, 치료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생활지도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진급 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전출시 원적교에서 전출교로 송부하며 또한 졸업 시 반드시 폐기 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1학년 학부모 위원장 : 이번 사건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경우이므로 진○○ 학생에게 선도조치 시 선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 형사 : 특별한 외상이 없고 차후 재발 방지와 부모님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를 고려하여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교감 : 저는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항상 인성교육이 학교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에 대하여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양정기준은 학교폭력가이드북을 참고로 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안은 상대에게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면사과와 피해자의 접촉 및 협박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장 : 학생의 폭력행위가 처음이니만큼 고려해 조치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나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국○○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부문이고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일별백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교육의 조치를 내려 지도하였으면 합니다. 특별교육의 선도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Wee센터 교육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은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김○○ 형사 : 예 학생부장의 선도 조치에 적극 동의합니다.

1학년 학부모(강○○) : 예. 저도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교감 : 예 특별교육이수 기일에 대해서는 학생부장이 인천광역시 Wee센터 박○○ 실장과 논의하여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기일을 잡도록 위임하여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 일동 : 예 동의합니다.

2학년 학부모 위원장 : 또한 같은 반 학생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접촉금지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금지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장 : 교내봉사를 병과 한다고 하면 특별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자를 고려하여 03일 정도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학교 내 봉사로는 조기등교(07:20까지)와 중·석식시간 식당 질서지도와 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불성실한 내용의 2배를 가하여 봉사활동을 시켜 반드시 선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입장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강○○, 김○○) 일동 : 예 동의합니다. 학생부장님과 학생부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감 : 그러면 가해자 진○○ 학생의 선도조치는 1호 서면사과와 2호 재발방지 약속, 3호 교내봉사 03일과, 5호 특별교육 이수는 학생부장이 인천광역시 Wee센터 박○○ 실장과 논의 하여 기일을 가하되 폭력행위가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의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해자 학부모 또한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전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일동(강○○, 김○○, 형사 김○○, 학생부장 정○○)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교감 :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모두 같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사건의 가해자인 진○○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 제 15조】에 의거 서면사과, 협박 및 재발방지 다짐과, 학교 내 봉사 3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이수(추후 Wee센터 박실장과 협의하여 4. 26일 13:00 ~ 17:00와 27일 10:00 ~ 17:00로 정함.)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천○○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김○○ 형사님과 학부모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학생부장께서는 가해자 진○○ 학생의 선도조치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관리해 주시고, 가해자 학부모에게 폭대위 결과 통보 및 재심안내와 피해자인 국○○ 학생의 심리상태와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 학생 특별교육 이수 : Wee 센터 2013. 4.24 ~25(2일간)

진○○ 학부모교육 : 2013. 5. 4(금) “부자감동캠프” 16:00 ~ 20:00

2013. 4. ○○(화)

인천○○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일부개정 2012. 0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계도
 -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 재활 등의 지원
 -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 지원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5.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11.20]]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시행일 2011.11.20]]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본조제목개정 2011.5.19] [[시행일 2011.11.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시행일 2012.5.1]]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시행일 2012.5.1]]
-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5.1]]
-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1]]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시행일 2012.4.1]]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11.20]]
[본조제목개정 2011.5.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시행일 2012.4.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삭제 [2012.3.21] [[시행일 2012.4.1]]

2. 삭제 [2012.3.21] [[시행일 2012.4.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 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제17조의2(재심청구)

-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

제18조(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 ·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 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시행일 2012.4.1]]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계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시행일 2012.5.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부 칙[2012.3.21 제113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9. 1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4.1]]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시 · 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 · 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 2. 해당 시 · 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 3. 시 · 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5. 판사 · 검사 · 변호사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8.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 2012.4.1]]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 · 검사 · 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4.1]]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시행일 2012.4.1]]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일 2012.4.1]]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시행일 2012.4.1]]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12.4.1]]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12.4.1]]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일 2012.4.1]]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부 칙[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신구비교표

<p>제10조 (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교육감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p> <p>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p> <p>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p> <p>1.「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p> <p>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p> <p>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p> <p>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p> <p>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p> <p>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0조 (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교육감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p> <p>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p> <p>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p> <p>1.「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p> <p>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설</p> <p>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p> <p>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p> <p>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p> <p>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	---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교폭력근절팀장 유충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생생활지도팀장 최은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사윤재환

편집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사방명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사조명곤

